

중앙일보

종합

정재원씨 일본기업 상대 제기

‘강제징용’ 보상 소송 기각

가주항소법원 “국제 조약에 위배” 제류중인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강제 징용 피해자 정재원씨가 항인으로는 처음으로 일본기업을 상대로 미법원에 제기한 피해 보상 소송이 4년여 만에 기각 처리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제 2 순회 가주항소법원은 지난 30일 1999년 가주에서 제정된 ‘징용배상 특별법’(일명 해

해 1월 초 헤이든 법이 연방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1차 심리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앞으로 남은 소송과정이 크게 불리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헤이든 법을 토대로 LA민사법원에 계류중인 강제 징용 관련 케이스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1951년 국제조약에 따라 2차대전 전 범에 대한 피해보상이 모두 중결했으며 따라서 전범문제가 미국 영토 안에서 다시 다루지는

것은 조약정신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해 6월 연방대법원에서 내린 가주보함법안(HVIRA)의 위헌심리 판결에 따른 것으로, 당시 연방대법원은 2차대전 당시 유혈지역에서 보함을 관제한 보험회사들이 수혜자 이들과 주소, 보험 구입자 이름과 주소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가주법은 외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판결을 내렸

다. 이같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 나오자 일본기업측은 헤이든 법도 정치외교관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주대법원에 제출했으며 주대법원은 항소법원에 헤이든 법을 재심리할 것을 명령하고 케이스를 돌려보냈다.

신해원 변호사는 “주대법원에 서 이미 케이스를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낸 상태라 항소할 경우 채택할 지가 미지수”라며 “특히 항소법원에서 이미 2번이나 심리한 케이스라 항소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연희 기자